

『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2일

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11월 4일

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엄 상 섭

나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 속 실천방법 및 체험·교육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‘기후변화체험교육관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·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목적(안 제1조)

-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○ 업무 및 기능(안 제3조)

-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
-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
- 어린이·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

○ 관람시간 및 휴관(안 제5조 ~ 제6조)

-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.
-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, 1월1일, 설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함.

○ 사무의 위탁(안 제10조)

-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교육·홍보·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.

○ 운영지원(안 제11조)

-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중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조와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, ‘기후변화체험교육관’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,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을, 안 제5조, 6조에서는 관람시간 및 휴관을,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,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지원을 규정하고 있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조와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,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속 실천방법 및 체험·교육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‘기후변화체험교육관’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